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3 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승원·조계원·전현희

박지원 • 정청래 • 박해철

이건태 • 김원이 • 장경태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「형법」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.

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,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.

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,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,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 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공표(公表)한"을 "공표, 유포, 누설한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도주 중인 범인 검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공표, 유포,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
- 1. 고소, 고발의 접수사실
- 2. 압수, 수색, 체포, 구속된 사실
- 3. 기타 일반적 절차적 사실로서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실
- 4. 범인 검거 및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표가 필요한 범죄사실 개요
- ② 법원의 피의사실공표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, 유 포,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6조(피의사실공표) 검찰, 경	제126조(피의사실공표) ①
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	
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	
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	
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	
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<u>공표</u>	2 <u> </u>
<u>(公表)한</u> 경우에는 3년 이하의	<u>유포, 누설한</u>
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	
지에 처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도주 중인</u>
	범인 검거 또는 불특정 다수인
	에 대한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
	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
	호의 사항만을 공표, 유포, 누
	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1. 고소, 고발의 접수사실
<u><신 설></u>	2. 압수, 수색, 체포, 구속된 사
	<u>실</u>
<u> <신 설></u>	3. 기타 일반적 절차적 사실로
	서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
	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실
<u> <신 설></u>	4. 범인 검거 및 범죄 피해 확
	산 방지를 위하여 공표가 필

| 요한 범죄사실 개요 | ② 법원의 피의사실공표금지 | 명령을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| 공표, 유포, 누설한 자는 5년 |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| 자격정지에 처한다.